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의 현재가 바뀌면 사회의 미래가 바뀐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지닌다. 이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아동은 이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근 10여 년 동안 OECD 국가들 중 대한민국 아동의 행복 수준이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음을 방증한다. 이런 현실에서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동의 삶은 어느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온전하게 지탱될 수 없다. 아동이 충분한 보호와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헌신과 가족의 안정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세 축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지지할 때 비로소 아동의 행복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진 가정들도 존재한다. 가정이 아동의 생존권이나 보호권, 발달권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해체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아동은 총체적인 취약성을 지닌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보다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내실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동학대나 자녀 살해 후 자살 등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동의 죽음을 가정의 개인적인 비극으로 받아들이 왔지만, 아동 한 명의 죽음은 곧 우리 사회 전체가 응답해야 할 공적인 사건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아동사망검토제도’는 사망 원인과 무관하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사망 사례를 국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제도다. 이는 아동의 사망을 단순히 통계로 바라보던 시각을 넘어 국가가 아동의 생명권을 책임지겠다는 제도적 약속이자 우리 사회의 도리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빈곤 문제는 학대와 더불어 생존권과 발달권, 보호권을 위협하는 아동기의 대표적인 위기다. 아동이 가정 내에서 폭력과 방임, 경제적 결핍 속에 방치될 경우, 이는 단순히 가정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다. 특히 빈곤은 학대의 위

힘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사회는 아동이 학대와 빈곤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원가족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돌봄 부담 완화, 경제적 지원, 부모 교육, 상담 등 실질적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의 책임을 나누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아동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로서 부모가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속 많은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자녀를 둔 부모의 행복도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부족, 개인 시간 빈곤,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재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이며 이로 인한 돌봄 공백,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은 여성 양육자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때로는 부부 간 갈등이나 폭력, 젠더 간 인식 차이로도 이어지며, 가정 내 관계의 긴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아동의 정서적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대응은 아동 행복 측면이나 사회 공동체의 건강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가정 내에서 돌봄 받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아동의 일상은 주로 사교육과 혼자 보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는 곧 놀이와 휴식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며, 아동은 정서적 외로움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디지털 매체에 의존하게 된다. 결국 아동의 일상은 '함께하는 가족의 시간 부족'에서 출발해 '과도한 경쟁과 미디어 중독'이라는 이차적 문제로 확장되는 구조적 연결 안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가정 양립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은 단지 부모의 양육 시간 확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아동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에만 머무르게 하는 시선을 넘어, 독립된 인격과 권리를 지닌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동이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처럼 학업과 놀이, 여가, 휴식이 균형 있게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기는 놀이와 휴식,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와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로서 아동기에 부여된 발달 과업을 잘 달성한다면 훗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유능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도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또래와 자유롭게 어울리며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은 충분히 놀고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채 그저 '작은 수험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¹⁾에 따르면, 아동의 평일 사교육

1) 이상정, 이주연, 전진아, 김수진, 임성은, 신영규, 류정희, 하태정, 권영지, 김시아, 김지현, 유민상(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시간 합계는 6시간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1시간과 비교해 매우 과도한 수치다. 같은 조사에서 친구와 놀기를 희망하는 아동은 42.9%에 달했으나, 실제로 친구와 놀 수 있는 아동은 18.6%에 불과하여 아동이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며 노는 시간이 학업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도 부족하다. 세계보건기구(2020)는 아동이 매일 최소 60분 이상의 신체활동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²⁾, 우리나라 아동의 94.2%는 WHO가 제안한 최소한의 신체활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활동의 부족은 결국 아동의 건강과 정신적 안녕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작용한다. 이뿐만 아니라 놀이 공간도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국 약 8만여 개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 다수가 공동주택 내에 위치하거나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 시설의 노후화, 놀이기구의 단조로움 등은 아동의 발달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³⁾.

더불어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 역시 아동의 권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노키즈존’은 단순히 ‘배려 없는 부모’의 문제로 치부되지만, 그 이면에는 아동을 공적 공간에서 배제하고 환영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시선이 자리하고 있다. 아동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공공장소에서조차 편안함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침해다. 아동이 마음껏 놀고 쉴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는 곧 아동의 삶 자체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는 아동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정책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권리를 독립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기반의 정비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아동 관련 법령은 주로 보호와 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을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포함해 ‘쉴 권리’, ‘놀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 등 아동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 권리를 명시적으로 담아내는 「아동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이 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핵심 원칙들을 국내 정책 전반에 내재화하고, 모든 아동 관련 정책이 권리 중심으로 설계되고 작동하도록 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 기본법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만이 아니라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5,117만 명이며, 이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한다. 비중은 적지만,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아동은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지금 아동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결코 밝을 수 없다. 아동의 행복을 보장하는 일은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WHO Guidelines on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r. World Health Organization.

3) 조숙인, 권미경, 이민경(2017).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사회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본질적인 투자이자 책무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는 “한 사회의 도덕성을 시험하려면, 그들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말했다. 아동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사회 전체의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은 사회와 국가가 가장 취약한 대상에 대해 연대와 공공성을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말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사회는 이 기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기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아동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는다. 아동의 행복할 권리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아동 권리보장원 역시 그 중심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넓게, 더 촘촘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다. 아동이 365일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향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걸음씩 더 내딛기를 바란다.